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4월 일
제 출 자 : 김명석의원외 5인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6.1.12.)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안 제4조)

- 당초: 7월 7일 ⇒ 변경: 6월 7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16. 4. 7~ 4. 12(6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7월”을 “6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집회일) ①---------- 6월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